

### Subject: Newsflash of HTW 4

제4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이하 'HTW 4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7년 1월 30일에서 2월 3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HTW 4차의 주요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1. 표준훈련과정(Model Training Course)의 유효화(Validation) (의제 3)

##### ○ 사무국의 모델코스 사전 검토 보고

- 모델코스개정 지침(MSC-MEPC.2/Circ.15)에 따라 만들어 진지 5년 이상 된 모델코스를 검토함.
- 13 개의 모델코스의 개발 담당 국가 정해짐.
-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운용 관련 모델코스의 개발범위(TOR)가 만들어 졌으나 완료되지 못하여 HTW 5 차에 제출

##### ○ 극지해역 운항 선박을 위한 기초 및 상급 교육 모델코스 제안

-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장 및 항해사관에 대한 기초 및 상급 교육에 대한 모델코스를 유효화하기로 결정함.

##### ○ 기관 유능부원 교육 모델코스

- 초안의 모델코스(총 32 시간)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논의 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제 5 차 HTW 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 기관 당직부원 교육 모델코스

- 유인기관실에서 기관당직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정기적 무인기관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부원을 위한 모델코스(총 64 시간)를 유효화하기로 함.

##### ○ 선원의 평가, 시험 및 증명 모델코스 3.12 개정

- 총 68.25 시간 중 이론 34.5 시간, 시연 26.75 시간 및 평가 7 시간으로 구성되며, 쟁점 사항 없이 본 모델코스를 유효화하기로 함.

##### ○ 강사를 위한 교육과정 모델코스 6.09 의 개정 초안에 대한 검토그룹 보고서

→ 강사요건을 교육학 자격과 함께 해운산업의 유효한 배경지식과 해상 교육경험을 갖춘 강사로 수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론 24 시간, 실습 36 시간으로 구성된 모델코스를 유효화하기로 함.

○ **선상 평가 모델코스 1.30의 개정 초안에 대한 검토그룹 보고서**

→ 총 교육시간은 기존 31 시간에서 16 시간(이론 10 시간, 실습 6 시간)으로 수정하여 본 모델코스를 유효화하기로 함.

○ **기관실 시뮬레이터 교육 모델코스 2.07**

→ Table A-III/6(전자사를 위한 최소 역량)과 Table A-III/7(전자기능원에 대한 최소역량)의 샘플 추가, 강사 요건 개정 등 소 개정 반영하여 모델코스 유효화하기로 함.

→ 2016년 제시된 80 시간의 시수를 총 97 시간으로 조정함

○ **항해 유능부원 모델코스 제안**

→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항해 유능부원에 대한 모델코스 초안에 대하여 Part E의 평가 항목에 샘플 및 평가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코스의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모델코스를 유효화하기로 함.

○ **관리급 레이더 항해 모델코스 1.08 개정**

→ 중국에서 본 모델코스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2017년에 본 모델코스를 개발하여 제 5차 HTW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2. 2010 마닐라 개정안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의제 5)

○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STCW 관련 정보의 GISIS를 통한 전달**

→ 회원국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되는 전체보고와 관련하여 GISIS 모듈 사용을 권고함.

→ STCW 협약 조항을 정확하게 반영한 새로운 GISIS 모듈을 개발하여 전문위원회 승인 요청함

○ **서류적 증거에 대한 PSCO 및 기타 제 3자 검사제도 지침의 개발**

○ **ECDIS 장비 교육 요건의 명확화**

○ **STCW 마닐라 개정의 적용 중 식별된 사항**

### 3. STCW-F 협약의 전반적인 검토 (의제 6)

#### ○ STCW-F 협약의 개정 제안

→ 대다수 회원국이 일본이 제안한 STCW-F 협약 개정안을 지지하였으나, "톤수/미터 단위 기준 적용", "seagoing service"의 정의, "limited waters"의 정의에 대하여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차기회의에서 더 검토하기로 결정함.

#### ○ 어선 사관을 위한 CoC 증서 분류의 대안적 접근 소개

→ 어선에 승선하는 해기사에 대한 자격 증명 분류에 대한 중국측 의견으로 톤수적용을 제안하였으나, 톤수/미터 단위기준 적용에 많은 이견이 있어 회원국들이 합의를 하지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24m 이상 어선 선장의 강제적 최소 자격요건을 위한 개정 제안

→ ECDIS 및 ARPA RADAR 훈련에 대하여 모든 어선에 장비를 갖추 필요없다는데 합의 하였고, 장비가 설치된 어선에 승선하는 선장 및 항해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함.

#### ○ 주기관 출력 750kW 이상 어선의 기관장 최소 요건 개정안 제안

#### ○ 1995 STCW-F 협약 개정안 제안에 대한 코멘트

→ FAO 가 제안한 문구 삽입에 대하여, 표 A-II1(section 1 의 2 열, section 9 의 2 열, section 12 의 2 열 (1) 및 (2), section 13 의 (2)), 표 A-II/2(section 8 의 2 열, section 9 의 2 열)에 대한 문구 삽입만 결정하였음.

### 4. 인적요소의 역할 (의제 7)

#### ○ 승무정원 및 선원의 피로

→ 선장이 포함된 2 인 당직체제에서는(6 시간 on/off 당직) 규정된 최소휴식시간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승기준에 대한 사항은 MSC 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해당 문서는 HTW 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 해사강사의 해양사고보고서의 접근 및 활용의 편리화 제안

→ 중국에서 해양사고의 교훈을 선원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해사분야 강사의 해양사고보고서의 접근 편리화 및 교훈의 활용을

제안하였으나, 다수의 회원국이 III 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후 논의하는 것으로 동의함.

### 5. 피로에 관한 지침 개정(의제 8)

#### ○ 피로에 관한 지침 개정

→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로 지침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일부 모듈의 몇 가지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018 년 회기에 완료되도록 합의함.

#### ○ 피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 “기타 이해관계자”에 관한 새로운 모듈의 추가 제안

→ 해당 모듈의 추가에 대한 찬반의견이 비등하였으나, 모듈의 추가 없이 기존의 관련 모듈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됨.

### 6. GMDSS 의 현대화 계획 초안(의제 9)

NCSR 4 차회의에 제공하기 위한 인적요소 및 사용자 관점에서의 GMDSS 현대화 계획 초안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러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할 때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함.

### 7. SOLAS 및 관련 협약에서 탈출로 기호 및 장비위치 표시 요건 개정(의제 11)

탈출로 기호 및 장비위치 표시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식별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 문구를 추가하자는 제안은 HTW 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 제안 문서를 SSE 4 로 이관하기로 결정함.

### 8. 2018 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제 14)

2018 년 HTW 5 회의 의장에 Ms. Mayte Medina(미국), 부의장에 Ms. Farrah Mohd Fadil(싱가폴)이 추천되어 재 선출됨.

**9. 기타사항(의제 15)****○ Polar code 통일해석**

-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항해 당직자인 선장, 일항사, 항해사에 대한 훈련 요건의 이해를 위한 비교표를 제안하고, 코드의 통일해석에 대한 STCW 회람문 발행을 제안하였으나, SDC 전문 위원회에서 다를 것인지 HTW 전문 위원회에서 다를 것인지에 대하여 더 검토 후 차기 HTW 회의시 결정하기로 함.

P.I.C:

Nam Dong-kuk / Deputy Senior surveyor

Convention &amp;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1

Fax: +82 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mailto:convention@krs.co.kr)**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4 (30 Jan. -5 Feb. 2017)*

No. IMO-2017-03

BRIEFING STATUS

*Flash*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